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추가〉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25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 하는 내용의 정보 추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7. 3.

다. 회 부 일 : 2026.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 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4.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6의5. 「 <u>상표법</u> 」 또는 「 <u>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6호의5까지의-----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또한 급증하여 상표권자의 권리침해 및 위조상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우려가 있음.
-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라 각 호로 나열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데¹⁾, 위조

상품 판매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정보 유형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음²⁾.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 이에 개정안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위조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상표법」 제107조3)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금지청구 대상 행위로 규정함.
 -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4)는

명할 수 없다.

3)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 행위’ 및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10조⁵⁾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청구 대상 행위로 규정함.

○ 그런데, 이러한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명시된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은 위조상품 유통 차단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행위⁶⁾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두 위조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여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정보의 유통금지가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5)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바. (생략)

대상이 되는 행위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
도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지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금지청구 대상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법원의 판단 이전에 미리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심의하여 그 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제재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판단 및 조치의 주체는 ‘법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수범자가 판단하기에는 판단 범위가 매우 넓고 명확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셋째, 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6년 7월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에 따라 불법정보 유형이 추가되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불분명하므로,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신중검토

- 상표권 침해 행위 등의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불법정보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신중검토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

당하는 내용'의 판단·조치의 주체는 '법원'이고, 수범자 및 집행 당국이 판단하기에 그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신중검토

- 현행 정보통신 심의 체계에서도 규율이 가능하고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신중검토

- 현행법으로도 관련 권리 보호가 가능하고,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신중검토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심의 절차에서 사실상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및 규제 부담의 확대될 수 있고, 적절한 거래정보 삭제 및 정상적 전자상거래 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28